

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선배 · 동료 의원님 여러분!
박철성 의원입니다.

지난 8월 26일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 - 「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15조에 따라 “시장은 서울시에 소재한 물재생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협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”하도록 하고 있으나,
 - 4개 물재생센터 중 난지물재생센터가 현재 서울시 관내가 아닌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어 조례 적용의 불합치를 야기하고 있는바 이를 개정하는 한편, 기타 조례 운

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.

□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 관내에 있지 않은 물재생센터라도 주민협의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주민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실제 운영에 일치하도록 현행화 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